

축산계열화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의와 계열업체와 농가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편집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노수현 과장의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관한 법률안’ 주제발표와 함께 본회 김옥성 부회장을 비롯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오리협회 이강현 전무,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 등 관계자들의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공청회 토론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축산계열화법 주요 내용〉

- 축산계열화사업, 사육경비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축산계열화사업 :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
 - 사육경비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사육비, 자재비, 인센티브 등을 포함
- 적용대상(안 제4조)
 - 적용대상이 되는 축종 및 계열화사업장의 범위를 부령에서 규정



지난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 계약서의 작성(안 제5조)

-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가축·사료의 품질기준, 사육경비의 지급기일 등을 포함
- 농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는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서를 작성

■ 사육경비의 지급(안 제6조)

-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지급을 원칙
-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최단기간에 지급
-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의 준수사항(안 제7조)

- 계열화사업자가 우월적 위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 농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강요 금지, 사육경비 미지급 및 회피 등 금지, 품질이 불량한 가축 및 사료 등 공급 금지 등
-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농가의 준수사항도 규정
 -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부당한 사육경비 인상 요구 등 금지

■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등(안 제8조 내지 제10조)

- 농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김학용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노수현 과장이 축산계열화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계약서의 준용 여부, 정보 제공 등을 평가
-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12조 내지 제14조)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 ‘중앙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
- 분쟁 발생 시에는 1차적으로 지방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조정위원회가 관할

■ 위원의 제척(안 제19조)

- 분쟁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위원을 기피 또는 회피

■ 분쟁의 조정 및 효력(안 제21조 및 제22조)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분쟁 발생 시 계열화사업자의 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 시·도지사는 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
-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한 후 조정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
– 이의제기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

■ 조정의 종결(안 제25조)

- 분쟁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

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

■ 시정조치(안 제26조)

-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약 내용 위반, 사육경비 미지급,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권하거나 명령

■ 계약농가협의회(안 제27조)

- 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해 계약농가 스스로 농가협의회를 설치
- 농가협의회는 계약내용, 가축·사료의 등의 품질 등에 대하여 농가를 대표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
- 계열화사업자는 농가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28조 및 제29조)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대등한 계약관계를 도모하고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각 3명 이상 10명 이하)

■ 보고와 검사(안 제31조)

- 농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 정책

의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와 계열화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

■ 수급조절(안 제31조)

-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하게 함

■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안 제33조)

-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토록 명령

■ 과태료(안 제34조)

- 계열화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사항〉
 - 계약서에 가축 및 사료의 품질기준 등 미기재
 -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경비 미지급
 - 계약농가에 대한 부당요구 등 준수사항 위반
 - 분쟁조정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 위반 등
-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축산계열화법 제정 공청회 토론 주요 내용 요약〉



▲ 좌장(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 의미 있는 법이다.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댄 만큼 성공적으로 만들어 진 것 같다. 이법은 양계 뿐만 아니라 오리와 양돈 등 전 축종에 적용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보완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



▲ 김옥성 부회장(한국계육협회) =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다.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예산

지원, 계열주체 및 사육농가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이 망라돼야 하지만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공정거래, 상호협력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수준의 내용이라면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계약서 작성 관련조항의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의무사항만 열거돼 있을 뿐 사육농가가 지켜야 할 기본 사육시설기준 등은 모두 빠져있다.

또 구체적인 계약조건들을 명시하고 그 이행여부에 따라서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그럼에도 굳이 표준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에서는 ‘품질이 불량한 가축, 사료’, ‘가축의 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가축’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공적기관에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분쟁의 소지를



▲ 이홍재 부회장(대한양계협회) = 축산업의 계열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부문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새로이 제정될 축산계열화법을 통해 각 구성원의 균형발전이 도모돼야 할 것이다.

육계산업의 경우 불공정 계약서의 개선과 함께 투명성 확보, 양질의 원자재 공급, 사육비 보상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최근에는 이의 분배 과정에서 적잖은 잡음도 나오고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법 제정이 이뤄지되 부족한 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뒷받침,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

없애야 한다.

아울러 그 설치근거가 마련된 축산계열화 사업협의회의 경우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운영에 그 내용을 포함하면 별도의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강현 전무(한국오리협회) = 오리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계열화도 가속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 분쟁 가능성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축산계열화사업 법률'은 어느 한 쪽의 이익에 부합하기 보다는 보다 공식적인 계약과 분쟁 조정으로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제정시 양측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계약서 작성시 양측의 의무사항 명시 등 보완이 필요하다.

법률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의 경영여건상 20일내 사육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축발기금 등을 통한 융자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계열화사업체 도산시 농가에 대해 사육경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

다.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경우 단체교섭권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는데 그 한계에 대한 분명한 언급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정선현 전무(대한양돈협회) = 축산계열화법에 계열화사업자의 본장(모돈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질병검사를 통해 청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입식되는 돼지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질병검사를 실시, 돈군의 질병위생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계약농가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우선 배정되도록 해 상호공존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산지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나, 계열화사업자의 시설비, 운영경비 등에 주로 배정되고 있다.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개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본장(모돈사업장)과 계약농가(비육돈 전문)의 전문화 유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모돈사업장은 시설과 인력, 방역, 사육기술 등에서 전문성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농가의 비육돈농장과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의 퍼아프스톤과

같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양돈계열화업계 일각에서는 축사신축이 어려운 현실에서 계열화사업자간 농가쟁탈전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양돈의 경우 농가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0년 이상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정민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번 축산계열화법을 보면 내용상 다소 모호한 용어로 인해 법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내용 ‘계약’과 ‘사육경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산계약’과 ‘유통계약’ 또는 ‘위탁사육계약’과 ‘매매사육계약’으로 표기가 검토돼야 한다.

사육경비 항목에서도 ‘사육비’가 언급되는 부분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산계약(위탁사육계약)일 경우 사육비는 ‘생산자보수(수수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원에 대한 비율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



▲ 김정주 교수(건국대학 교) = 정부가 마련한 축산계열화법 조문 가운데 사육비라는 언급은 부적절하다. 정민국 박사의 의견대로 인건비의 의미가 있는 ‘사육보수’가 적절한 표현이다.

계약서 작성시 사육두수와 회전수, 방역 및 기록관리, 상차 및 운송, 출하증량 계근, 육성률(폐사율), 사료요구율, 원자재의 임의 치분 금지, 계약위반시 조치, 담보, 비용의 부담 등 필수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모범사업자’ 유효기간도 3년이 아닌 2년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또 모범사업자의 경우 생산된 가축총량의 50% 이상을 농가와의 계약에 의해 조달도록 해 자체농장을 가진 계열화사업체 등장을 저지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중앙조정위원회만으로 충분하다. 지방조정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